

제 904 호
1982. 4.22

발행인 : 서울특별시장 박 영 수
편 집 : 공 보 관 이 총 우
전화 725-7834
인 쇄 : 서울특별시종합발간실
전화 725-6090

시 보

차 례

◎ 조 례	
제 1621 호 :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	3
◎ 규 칙	
제 1972 호 : 서울특별시립예술단체운영규칙중개정규칙	3
◎ 훈 령	
제 61 호 : 공무원연급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매점운영규정	8
◎ 고 시	
제 164 호 : 도시계획용도지구(최고고도지구, 교육및연구지구, 제 2 종 공지지구주차장정지지구, 미관지구)실효및결정	22
제 165 호 : 도시계획사업(학교)시행허가	30
제 166 호 : 도시계획사업(학교)시행허가	30

<이면계속>

1.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
2.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406 서울특별시

제 167 호 :	도시계획시설 (공원) 지적 승인	31
제 168 호 :	도시계획시설 (수도) 결정및지적승인	32
제 169 호 :	도시계획시설 (도로) 지적 승인	32
제 170 호 :	도시계획시설 (학교) 지적 승인	32
제 171 호 :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34

◎ 공 고

제 173 호 :	KS 표시허가취소처분공고	35
제 174 호 :	도시계획사업 (학교) 시행계획공감공고	38

◎ 사 령 35

조 례

문교부 장관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82년 4월 27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교육감 구본석(인)

◎서울특별시조례제 1621 호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 (안)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지방공무원복무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6 조 제 1 항중 "수위"를 "방호원"으로 한다.

제 9 조 제 1 항중 "4월 1일부터 10월 말까지는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고, 11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말까지는 9시부터 17시까지"를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제 10 조의 제목을 "근무시간변경"으로 하고, 동조중 "교육감"을 "각급 기관의 장(학교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며 "근무시간을 변경 또는 연장할 수 있다"를 "근무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로 한다.

제 11 조 제 1 항중 "각급기관장(학교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각급기관의 장"으로 한다.

제 19 조 제 1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병역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 소집, 집열, 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하려 할때

부

칙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규

칙

서울특별시립 예술단체운영규칙중 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1982.4.28

서울특별시장 박 영 수 (인)

◎서울특별시규칙제 1972 호

서울특별시립 예술단체 운영규칙중 개정규칙

서울특별시립 예술단체 운영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8 조 제 2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교향악단의 상임지휘자는 정

호봉, 교향악단 지휘자와 작단체
최고책임자는 1호봉으로 교향악단,
국악관현악단의 악장과 가무단의
지도단원은 2호봉으로 한다.

제 9 조 (직책수당)를 다음과같이 한다.
각예술단체별로 상임지휘자, 지휘자,
단장, 지도단원, 악장, 수석 (1, 2)
부수석, 총무, 부총무 및 악보담당
을 둘수있으며 이들에게 지급할
직책수당은 별표 4와 같다.

제 10 조 제 2항을 다음과같이 한다.
(2) 제 1항의 예능연구보조비의 지급기
준은 다음과 같다.

1) 교향악단은 능력에따른 등급, 정
원제를 적용한다.

다만, 상임지휘자, 지휘자 및 악장
은 등급심사에서 제외한다.

2) 기타 예술단체는 제 8조의 규정
을 준용한다.

<별표 1>

단원의 종류와 정원

구 분	정 원	구 분	정 원
1. 교향악단 (110 인)	가. 상임지휘자 1인 나. 지휘자 1인 다. 악장 2인 라. 총무 1인 마. 제 1수석 11인 바. 제 2수석 11인 사. 부총무 2인 아. 단원 77인 자. 악보담당 2인 차. 악기보성 2인	4. 가무단 (50 인)	가. 단장 1인 나. 지도단원 4인 다. 총무 1인 라. 수석 3인 마. 부수석 3인 바. 반주자 1인 사. 단원 36인 아. 악보담당 1인
2. 국악관현 악단 (53인)	가. 지휘자 1인 나. 악장 2인	5. 합창단 (60 인)	가. 지휘자 1인 나. 총무 1인

다만, 단원중 (제 9조의규정에 의하여
직책수당을 받는자를 제외한다. 이하
본조에서 같다)

예능도 및 근무성적이 극히 우수한자
에 대하여는 당해 위촉년도에 한하여
다음의 기준에따라 예능연구 보조비를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예능도 단원정원의비율 가산 호봉

수	5 %	+ 5호봉이내
우	10 %	+ 3호봉이내

제 14 조 (공연제작사례)를 신설한다.

공연제작예때론 사례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부 칙

이 규칙은 198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구 분	정 원	구 분	정 원
	다. 종 무 1인 라. 수 석 6인 마. 부 수 석 6인 바. 단 원 36인 사. 악 보 담당 1인		다. 수 석 4인 라. 부 수 석 4인 나. 반 주 자 2인 바. 단 원 47인 사. 악 보 담당 1인
3. 무용단 (50인)	가. 단 장 1인 나. 총 무 1인 다. 수 석 3인 라. 부 수 석 3인 마. 무 용 수 42인	6. 소년소녀 합창단 (122인)	가. 지휘자 1인 나. 반주자 1인 다. 단원(무급) 120인

급 여 원 액

< 별표 2 >

(단위: 원)

호	봉	교향악단	기타예술단체
정		505,000	2
1		471,000	274,000
2		465,000	283,000
3		457,000	271,000
4		450,000	258,000
5		442,000	246,000
6		435,000	234,000
7		428,000	226,000
8		421,000	220,000
9		413,000	211,000
10		407,000	203,000
11		398,000	196,000
12		391,000	190,000
13		382,000	182,000
14		372,000	174,000
15		363,000	168,000
16		353,000	163,000

호	분	교 함 악 단	기 타 예 술 단 체
17		346,000	156,000
18		335,000	148,000
19		323,000	141,000
20		313,000	135,000
21		303,000	127,000
22		298,000	115,000
23		287,000	101,000
24		277,000	
25		270,000	
26		255,000	
27		240,000	
28		218,000	
29		200,000	
30		178,000	
31		157,000	
32		145,000	
33		131,000	
34		115,000	

직 책 수 당

< 별표 6 >

구	분	인 원	월 직책수당	비 고
교 함 악 단	상임지휘자	1	110,000	
•	지 휘 자	1	95,000	
•	악 장	2	85,000	
•	총 무	1	80,000	
•	제 1 수 석	11	70,000	
•	제 2 수 석	11	60,000	
•	부 총 무	2	40,000	
•	악 보	2	30,000	

구	분	인 원	월 직책 수 당	비 고	
국악관련악단지휘자		1	165,000		
"	악 장	2	100,000		
"	총 무	1	70,000		
"	수 석	6	60,000		
"	부수석	6	40,000		
기타예술단체지휘자, 단장		4	165,000		
가 무 단 지 도 단 원		4	40,000		
기 타 예 술 단 체 수 석		10	15,000		
"	부수석	10	13,000		
"	총 무	3	50,000		

예 능 연 구 보 조 비 월 액

<별표 7>

(단위: 원)

교 합 악 단				기 타 예 술 단 체	
동 급	인 원	월 액	비 고	호 봉	월 액
1	1	300,000	상 임 지 휘 자	1	149,000
2	1	290,000	지 휘 자	2	144,000
3	2	280,000	악 장	3	137,000
4	11	250,000	제 1 수 석	4	132,000
5	11	210,000	제 2 수 석	5	125,000
6	10	170,000	단 원	6	117,000
7	10	140,000	"	7	114,000
8	12	110,000	"	8	110,000
9	12	90,000	"	9	107,000
10	12	80,000	"	10	104,000
11	14	70,000	"	11	100,000
12	14	60,000	"	12	95,000
				13	92,000
				14	89,000
				15	84,000

교 항 학 단				기 타 예 술 단 체	
등 급	인 원	월 액	비 고	호 봉	월 액
				16	82,000
				17	78,000
				18	74,000
				19	70,000
				20	66,000
				21	62,000
				22	51,000
				23	44,000

훈 령

공무원연금서울특별시교육
위원회매점운영규정

1982.4.26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교육감 구분석①

○ 훈 령 제 61 호

공무원연금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매점운영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서울특별
시교육위원회 연금매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산하교육행정기관 및
각급 학교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 2 조 (운영위원회설치) 매점의 운
영을 위하여 공무원연금 서울특별
시교육위원회 매점운영위원회 (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 3 조 (운영자금) ①매점운영을 위
한 기본운영자금은 공무원연금관리
공단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판매
이익금 및 기타 지원금으로 한다.
②차입금의 상환은 공무원연금 관
리공단의 요구에 의하여 운영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 2 장 운 영 위 원 회

제 4 조 (구성) ①운영위원회는 위원
장, 상임위원을 포함한 10 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상임위원은 서무과장이되며 위원은 4급 상당공무원 및 초·중·고등학교 교원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 5 조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매점운영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매점운영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매점운영의 수익을 결정에 관한 사항
4. 이익금 및 결손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5. 운영자금 차입 및 상환에 관한 사항
6. 매점운영 규정제정에 관한 사항
7. 기타 매점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 6 조 (회의) ①운영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년 2회(예산, 결산) 개최한다.

②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③운영위원회는 제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과반수인 경우에는 무결로 한다.

④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은 교육감의 결재로 효력을 발생한다.

제 7 조 (간사) ①운영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당연히 매점운영공무원(이하 "운영공무원"이라 한다)이 된다.

②운영위원회의 간사는 본청 계장급 공무원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한다.

제 8 조 (감사) ①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운영위원중에서 1인을 감사로 지정할 수 있고 감사는 필요한 인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②감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감사한다.

제 3 장 조 제

제 9 조 (조직) ①매점업무의 집행은 위원장·상임위원·간사·연금매점운영책임자(이하 "판매소장"이라 한다) 및 그 소속 직원이 행한다.

②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며 매점운영에 관한 제반업무를 통리한다.

③상임위원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④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매점운영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⑤매점종업원(이하 "종업원"이라

한다)와 정원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감의 결재를 받아 시행한다.

제 10 조 (종업원의 입면) ①종업원은 위원장이 입면한다.

②종업원의 입용기준은 위원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제 11 조 (종업원의 해고) 위원장은 종업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고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직 의사를 표명하는 경우
2. 근무가 불성실하거나 담당업무의 수행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범죄사실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거나 불량한 소행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
4. 위원장의 사전승인없이 타인이 사업에 종사할 때
5. 사전승인없이 3일이상 계속 부재출결근할 경우
6. 본업상 감원이 필요할 경우

제 12 조 (권한의 위임) 매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은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그 권한의 일부를 상임위원, 간사 및 판매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 4 장 복무 및 보수

제 13 조 (일과시간) 종업원의 근무

시간은 공무원의 출근시간 30분 전으로 하고 퇴근시간은 공무원의 근무시간 1시간후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매점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일과시간을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 14 조 (출장) ①직원이 업무로 출장할 때에는 출장명령을 받아야 한다.

②출장자에 대하여는 공무원 여비규정에 준하여 출장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15 조 (휴가) ①종업원의 휴가는 년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하여 유급으로 실시한다.

②년가는 다음 각호의 범위내에서 실시한다.

다만, 년가일수는 15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1. 근속기간이 6개월에서 1년미만인 자 : 5일
2. 근속기간이 1년이상에서 2년미만인 자 : 7일
3. 근속기간이 2년이상인 자는 매 1년마다 1일을 가산한 일수로 한다.

③병역법에 의한 소집, 법원의 소환, 법률규정 기타 천재지변, 교통차단등으로 출근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필요한 기간을 공가로 처리한다.

④본인 또는 형제자매의 결혼, 부모의 회갑, 적제 준비금의 사망, 병원의 발생, 기타 특별한 사유로 휴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10일미만의 범위내에서 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제 16 조 (피복지급) ①위원장은 매점 운영상 필요할 때에는 종업원에게 제복을 지급하여 착용시킬 수 있다.

②제복을 지급받은 종업원은 일과시간중에는 제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③종업원이 퇴근할 시에는 지급받은 제복은 반납하여야 한다.

제 17 조 (보수의 종류) ①종업원의 보수는 봉급 퇴직금 및 제수당으로 한다.

②제수당은 시간외수당 휴일근무수당 영업실적수당 기말수당으로 한다.

제 18 조 (봉급) 종업원의 봉급월액 기준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감의 결재를 받아 시행한다.

제 19 조 (수당지급) ①종업원이 정상적인 영업이외에 2시간이상 연장근무를 하거나 휴일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감의 결재를 받아 시간외 또는 휴일 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영업실적수당은 영업실적이 우수한 경우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감의 결재를 받아 지급할 수 있다.

제 20 조 (기말수당) ①종업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매년 3월, 6월, 9월, 12월의 보수지급

일에 기말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기말수당을 지급하는 월의 말일(이하 "기준일"이라한다) 이전 전기기준일 이후사이에 제 11조 규정 및 기타 사유로 해고된 자로서 기말수당 지급기간의 2분의 1미만 근무하고 퇴직한 자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기말수당은 기말수당 지급기간중 당해종업원의 평균월보수액(기말수당 지급기간중 당해인에게 지급한 제수당을 제외한 봉급액을 근무일수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실제로 고용되어 근무한 기간에 따라 다음 공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기말수당 지급기간의 2분의 1 이상을 근무하고 퇴직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퇴직한 월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할 수 있다.

근 무 월 수

평균월 봉급액 X $\frac{\text{기말수당지급기간}}{\text{기말수당지급기간}}$ = 기말수당

③근무월수계산에 있어서는 실제근무기간이 15일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제 21 조 (퇴직금) ①1년이상 근무한 종업원이 퇴직하는 때에는 퇴직금을 지급한다.

②퇴직금은 봉급월액을 12로 나눈 금액에 근무월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③근속월수의 계산은 근무일수가 15일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하며 15일이상인 때에는 1월로 계산한다.

④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급여
충당금으로 퇴직급여액의 당해년도
순증가분 이내의 금액을 년 1 회
적립할 수 있다. 다만, 퇴직급여
충당금 적립총액은 퇴직급여 총액
의 85% 이내로 한다.

제 5 장 예 산 회 계

제 22 조 (회계원칙) ①매점회계는 그
수입으로서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
으로 한다.

②매점의 처리는 사업의 경영성과
가 정확하게 파악될 수 있도록
발생의 사실에 따라 정규부기의
방법으로 처리한다.

③매점의 회계년도는 정부의 회계
년도와 같다.

④수익 및 비용의 제상과 자산부
채 및 자본의 증감변동에 관하여
는 그 원인이 되는 사실이 발생
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년도소속
을 구분한다.

제 23 조 (회계독립) 매점회계처리는
독립하여 처리한다.

제 24 조 (회계관계직원 임명) ①위원
장은 회계관계업무의 수행을 위하
여 공무원인 임직원중에서 출납명
령관 및 출납원과 동 분임회계직
기타 회계직을 임명하여 회계관계
업무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게 한다

②회계관계직원의 종류 및 사무처
리기준은 위원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③제 2 항의 회계관계직원은 재정보
증인을 설정하거나 신원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 25 조 (예산서의 작성) ①예산서
는 회계년도 개시 30 일전까지 편
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감의 결재로 확정한다.

②예산서는 제 31 조의 규정에 의한
제정과목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③예산서에는 회계년도중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는 모든 수입과 지
출을 제상하여야 한다.

제 26 조 (예산의 성립) 매점의 예산
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
육감의 결재로 확정한다.

제 27 조 (예비비) ①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출예산의 1/100
이상을 예비비로 제상할 수 있다

②예비비는 위원장이 관리한다.

③예비비의 사용이 필요한 경우
그 이유 및 금액과 추산의 기초
를 명백히 한 명세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28 조 (예산의 전용) 위원장은
예산집행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세항 및 목간 전용할 수
있다.

제 29 조 (초과수입에 의한 지출)
수요의 증가에 따라 초과되는 수

입은 수입을 원인으로 하는 지출에 충당할 수 있다.

제 30 조 (거래의 처리) ① 모든 거래는 전표에 의하여 처리되어야 한다.

② 전표는 입금전표 출금전표 대체입금전표 및 대체출금전표로 구분한다.

③ 전표에는 계정과목을 표시하여야 하며 상대계정과목을 표시하여야 한다.

④ 전표에 기재된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관계증빙서류가 구비되어야 한다.

⑤ 전표에 기재된 금액은 이를 정정하지 못하며 분계정리후 오류가 발견되었을 시는 반드시 정정전표를 작성하여 정정하여야 한다.

⑥ 회계관계장표의 서식과 규격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 31 조 (계정과목) 회계처리의 계정과목은 별표 2 와 같다.

제 32 조 (장부) ① 회계장부는 주요부와 보조부로 구분한다.

② 주요부는 분개장과 총계정원장으로 한다. 다만, 분개장은 전표 및 일제표를 일자순으로 철하여 갈음하고 보조부는 카드로 대체할 수 있다.

1. 총계정원장은 과목별로 계좌를 설치하여 당해 과목에 일제표에서

금액을 전기하고 매월말 대차누계를 기재한 후 잔액을 기재하여 마감한다. 다만, 현금계정에 있어 일제표의 입금 한계액은 총계정원장의 차변에, 출금 한계액은 대변에 각각 기재한다.

2. 보조부는 당해계정거래 일체의 명세줄 분류 기입하고 거래내용을 상세히 기록하여 매월말 총계정원장의 당해계정과 대조확인한다.

제 33 조 (장부의 마감) 장부의 마감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현금출납장은 매일 마감한다.
2. 총계정원상 및 보조부는 매월말에 마감한다.

제 34 조 (일제표) 일제표는 매일 일과시간 종료시를 기준으로 당일분의 거래전표를 집계하여 다음 각호의 요령에 따라 작성한다.

1. 일제표의 계정과목은 "별표 2"에 의한 순서에 따라 작성한다.
2. 일제표에는 대체 및 현금출납에 관한 란을 설치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3. 일제표에는 전일 현금잔액을 대변에 기록하고 당일의 현금잔액을 차변에 기입하여 대차를 일치시킨다.

제 35 조 (증빙서) ① 증빙서류는 거래사실의 경위를 입증하며 기장

증거가 되는 서류로서 그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물품대금지불시 : 접수보고서, 청구서, 영수증
2. 인건비지불시 : 청구서, 영수증
3. 출장여비지불시 : 여비지불계산서
4. 기타 지불시 : 청구서, 영수증

②판공비, 소액운임,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영수증을 청구하지 목하는 때에는 지급증으로 영수증을 갈음할 수 있다.

제 36 조 (증빙서작성의 생략) 오기, 정정 또는 결산시 제정간 대체등과 같이 단순히 계산 조작의 필요에 의하여 발생한 준거래에 있어서는 그 사유 및 산출내역의 기재된 건표로서 증빙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 37 조 (금전지출의 원칙) ①지출은 수표에 의하여 수취인별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인건비, 여비, 기타 소액의 경비는 수표를 일괄하여 발행할 수 있다. 다만, 영수증은 수취인별로 받아야한다.

제 38 조 (지출원인행위결의서 작성)

①지출원인행위를 할 때에는 지출원인행위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지출원인행위결의서에 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내부 결재로서 갈음할 수 있다.

②비용예산중 다음 각호의 경비물지출할 때는 지출원인행위결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1. 공공요금, 인건비, 여비, 제세공과금, 판공비
2. 정배적인 확정경비
3. 법령규정등 일정한 기준에 의한 경비
4. 정부투자기관으로부터 판매를 위한 재료 또는 상품을 매입하는 경우
5. 장기공급계약을 체결한 자로부터 판매를 위한 상품을 매입하는 경우

6. 50만원 미만의 판매를 위한 재료 또는 상품을 매입하는 경우

제 39 조 (계약의 방법) 위원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매매 기타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외계법을 준용하여 입찰에 의하여 일반경쟁에 부쳐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 성질 또는 사업운영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외할 수 있다

제 40 조 (수의계약의 범위) 위원장

또는 위임을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외할 수 있다.

1. 예정가격이 200 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물품을 매입하는 경우

2. 예정가격이 300 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물품의 제조를 하게 하는 경우

3. 관공서, 정부투자기관(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을 포함한다) 또는 정부출자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4. 법령 또는 법령에 의거한 고시에 의하여 배급 또는 가격이 통제된 물품을 매입하는 경우

5. 당해 물품의 제조자가 단일인 경우로서 다음 물품의 제조 또는 매입으로는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6. 매장에서 판매하는 상품의 제조자와 직접 계약하는 경우

7. 계약의 목적 또는 성질상 불가피하거나 긴급한 수요로 인하여 경쟁에 부칠만한 시간적 여

유가 없는 경우로서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 41 조 (수의계약시 예정가격작성의 생략) 제 40 조 제 1 호 내지 제 4 호와 제 43 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 42 조 (수의계약시 계약서작성의 생략) ① 제 40 조 1 호 내지 4 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청구서, 각서, 협정서, 승락사항 등 계약성립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서류를 받아 비치하여야 한다.

제 43 조 (장기공급계약) ① 관여들 목적으로 하는 재로 또는 상품의 가격안정과 공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장기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전항의 계약은 단가 또는 금액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당해물품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수량 또는 시간만 계약할 수 있다.

③제1항에 규정한 장기공급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공급업자의 선정 및 상품종류는 위원장이 정한다.

제 44 조 (계약보증금의 면제) 계약의 성질상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제 45 조 (금전의 보관) ①모든 수입금은 당일중으로 금융기관에 예입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마감시간 이후의 수입금은 현금으로 보관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사업운영상 필요한 금액은 소액 현금으로 별도 보관시킬 수 있다.

제 6 장 결 산

제 46 조 (결산의 종류) 결산은 연말결산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반기별 결산을 할 수 있다.

제 47 조 (결산지침) 판매소장은 다음 각호의 제표를 익월 15일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손익제산서
2. 배차대조표
3. 합계잔액시산표

4. 미점산내역표

5. 예산집행실적보고서

제 48 조 (대조제정정리) ①판매소장은 종합결산서 작성시 대조제정금액을 수정분개 처리하여 재무제표의 표시금액에서 제외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매점의 재무제표는 수정하지 아니한다.

제 7 장 영업 및 물품관리

제 49 조 (영업시간) 매점의 영업시간은 공무원의 일과시간과 같이 한다. 다만,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근무시간 범위내에서 영업시간을 조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 50 조 (이용대상의 제한) 매점의 이용대상자는 공무원 및 그 가족으로 한다.

제 51 조 (물품의 종류) ①매점의 물품은 별지 3의 분류기준에 따라 접기, 소모품, 재료 및 상품으로 구분 관리한다.

②접기는 품목별로 소정의 접기카드에 등재하여 관리하고 제 55조의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모정리한다.

③상품은 소정의 판매품 원장카드에 금액으로 등재하여 관리하고 판매보고에 따라 정리한다.

제 52 조 (물품관리) 매점의 효율적인

물품관리특 위하여 위원장은 매점 운영공무원중에서 물품관리관 물품출납공무원을 임명할 수 있다.

② 물품관리관 및 물품출납공무원의 사후처리규칙은 일반회계에 준한다.

③ 상품의 판매이윤율은 운영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 53 조 (재산조사) 상품 및 집기에 대하여는 년 1회 정기재산조사를 실시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시 재산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 54 조 (부족품의 처리) ① 재산조사 또는 재고조사결과 부족품이 발견된 때에는 관리자가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아니하였음이 증명되었을 때에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손·망실 처리할 수 있다.

② 손·망실액이 10 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55 조 (불용품의 처리) ① 매점의 집기중 폐품 또는 불용품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매각하여 정리

한다. 다만, 매각이 곤란하거나 매각할 가치가 없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거처리하여 정리할 수 있다.

② 변질 또는 제질적 영향이나 소비자의 기호 변동으로 그 가치가 현저히 감소된 상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위원장이 정하는 가격에 따라 원가이하로 판매하여 처리한다.

제 56 조 (불량품의 처리) 매점에서 판매한 품목이 불량품인 경우에 그 하자의 책임이 개입자에게 있지 않음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이를 교환 또는 환불할 수어야 한다.

제 57 조 (시행세칙) 매점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별지 1)

제 정 과 목

1. 비용부문

관	항	목	비 고
연 금 매 점	1. 상 품 비	1. 상품매입비	
	2. 인 건 비	1. 급 여	
		2. 퇴직급여충당금 적립액	
		3. 영업실적수당	
		4. 상여금	
		5. 기타수당	
		6. 후생비	
	3. 관 리 비	1. 수수료, 수선비	

관	항	목	비 고
	4. 자산취득비	2. 감모손실비 3. 잡 비 4. 보 상 금 5. 기관운영판공비 6. 특별판공비 7. 정보비 8. 여 비 9. 수도광열비 10. 개 관비상자 11. 가전제품 취급수수료 12. 보험료	
	5. 감가상각비	1. 집 기 2. 소모품 3. 사무용품 4. 피 복	
	6. 예 비 비	1. 감가상각비 1. 예 비비	
	7. 잉 여 금	1. 잉여금	
2. 수입부문			
관	항	목	비 고
연금매점	1. 판매수입 2. 감가상각충당금 3. 부채성충당금 4. 기나수입	1. 상품판매수입 1. 감가상각충당금 1. 퇴직급여충당금 1. 미처분이익잉여금 2. 상품매입 예누리 3. 이자수입	
(별지 2) 제 정 과 목 (손익계산서 제정과목)			
1. 비용부문			
관	항	목	
연금매점	1. 상 품 비 2. 인 천 비	1. 상품매입비 1. 급 여 2. 퇴직급여충당금 전입액	

관	항	목
	3. 관 리 비	3. 영업실적수당 4. 기타수당 5. 급양비 6. 후생비 7. 일용인부임 1. 수수료, 수선비 2. 소모품비 3. 피복비 4. 감모손실비 5. 사무비 6. 대손상각비 7. 잡 비 8. 여 비 9. 보상비 10. 기관운영간공비 11. 특별판공비 12. 정보비 13. 수도광열비 14. 보험료 15. 공공요금 16. 도서구입비 17. 회의비 18. 자산취득비 19. 개관비상각
2. 수입부문		
관	항	목
연 금 매 점	1. 판매수입 2. 기타수입	1. 상품판매 수입 1. 상품매입 예누리 2. 이자수입 3. 잡수입

관	항	목	
	3. 감가상각충당금 4. 퇴직급여충당금 5. 잉여금		
(대차대조표 제정과목)			
관	세항	목	
1. 자 산	1. 유동자산	1. 현금 2. 당좌예금 3. 제예금 4. 계산금 5. 가자금 6. 미수수입금 7. 외상매출금 8. 소모품 9. 사무용품 10. 피복 11. 저장품 12. 식재료 13. 이월상품 14. 선급금 15. 예치보증금	
	2. 고정자산	1. 설비 2. 집가 3. 전화가입권 4. 차입보증금	
	3. 이연자산	1. 개관비	
2. 부 채	1. 유동부채	1. 외상매입금 2. 선수금 3. 예수금 4. 예수보증금 5. 미지급비용 6. 가수금 7. 미지급금 8. 선수수익	

관	세	항	목
3. 충당금	2. 고정부채	1. 차 입 금	
4. 자 본	1. 부채성충당금	2. 지 원 금	
	1. 자 본 금	1. 퇴직급여충당금	
	2. 이익잉여금	1. 자 본 금	
		1. 이월이익잉여금	
5. 잡계정		2. 당기순이익	
		1. 고 위	
(별지 3) 물 품 분 류 기 준			
구	분	분	류 지 도
집	기	직접관매물 목적으로 하지 않은 물품으로서 1회 사용으로 재사용이 불가능 또는 사용가치가 소멸되거나 현저히 감소되지 않고 내용기간이 적어도 1년이상 되는 물품중 소모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물품	
소	모	직접관매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물품으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물품 1. 한번 사용하면 원래의 목적에 다시 사용할 수 없거나 사용가치가 소멸되는 물품 2. 내용기간이 1년 미만으로서 사용에 비례하여 감모되는 물품 3. 유리프라스틱, 도자기, 질그릇, 섬유류 기타 이와 유사한 성격의 제품으로서 파손되기 쉬운 물품 4. 내용기간이 1년이상 되더라도 단가가 1만원 미만의 소액이고, 관리상 유실우려가 많은 품목 (예:수저, 찬그릇등) 5. 다른 물품을 수리, 완성제작, 생산하거나, 지설 보수공사 등에 투입, 사용됨으로써 그 본성을 상실하는 물품 (예:수리용, 부속품목)	

구 분	분 류 지 도
상 품	6. 기타 제 1 호 내지 제 5 호와 유사하는 성격의 물품 판매를 목적으로 매입하여 가공하지 않은 상태로 직접 판 매하는 물품(예:매점 및 약국상품 또는 의약품 식당의 음료 연초등)

교 시

◎ 서울특별시고시제 164 호

도시계획 용도지구(최고 고도지구, 교육 및 연구지구, 제 2 종 공지지구, 주차장정지지구, 미관지구) 실효 및 결정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용도지구중
건설부고시 제 174 호(72.5.18)
및 서울시고시 제 139 호(77.5.
29)로 결정된 최고 고도지구,
건설부고시 349 호(72.8.14)로
결정된 교육 및 연구지구, 건설
부고시 739 호(71.12.30)로
결정된 제 2 종 공지지구, 서울시고
시 제 128 호(78.3.27)로 결정된
주차장정지지구, 건설부고시 109 호
(76.7.19) 및 건설부고시
1169 호(76.10.28) 및 건설부
고시 제 156 호(77.6.19) 및 서
울시고시 제 81 호(78.3.8) 및
서울시고시 105 호(78.3.17),

서울시고시 330 호(78.7.4) 및
서울시고시 381 호(78.7.31)로
결정된 미관지구가 지적승인기간
도과로 인하여 위 결정후 2년이
되는 다음날로 각각 실효되었기
도시계획법 제 14 조 및 도시계획
법 제 12 조의 전설부표시 제 52
호(81.12.31)의 권한위임
규정에 의거 실효 및 결정
고시 한다.

2. 관계도서는 관할구청 도시정비과
와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
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

1982.4.22

서울특별시장

○ 도시계획 용도지구 실효 및 결
정조서: 조서별첨

※ 별첨 도면표시와 같음
도면생략

6 용도지구 실효 및 결정조서			
지 구 명	위 치	면 적 (㎡)	비 고
제 2 종 공 지 지 구	성북구 정농동일대 (북악터널 동측)	322,000	재 결정
	송로구 명창동일대 (북악터널 서측)	615,000	·
교 육 및 연구 지 구	도봉구공능, 동대문구신내, 목동일대 (육사주변)	1,978,000	·
	동작구 신대방동, 관악구 신 림동 일대 (공사주변)	1,006,000	·
최 고 고 도 지 구	중구 신당동일대	32,322 (성곽높이 이하)	·
	종로구 청운, 신교, 육인, 궁 정, 누상, 통인, 누하, 제부, 필운동 일대	415,800 (현지안고도부터 15 m이하)	·
주 차 장 정 비 지 구	서울시 전역 (단, 공원, 개발제한구역, 주 거전용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풍치지구제외)	280,000,000	·

미 관 지 구 실효 및 결 정 조 서					
1 종 미관지구					
번 호	종 별	연 장 (m)	면 적 (㎡)	위 치	비 고
1	1 종	2,000	202,290	중앙청앞광장~서울역광장	재 결정
2	·	850	26,730	시청앞광장~외주로 4기	·
3	·	4,294	39,342	남대문광장~한국은행~을지로 입구~화신앞광장	·

39-24

제 904 호 시

보 1982.4.22

번호	종별	연 장 (m)	면 적 (㎡)	위 치	비 고
4	1 종	407	16,830	새종로광장~화신앞광장	재 결 정
5	"	1,000	24,000	광화문~서대문	"
6	"	2,400	57,600	종로 2 가~동대문	"
7	"	500	12,000	화신앞~안국동로타리	"
8	"	2,700	64,800	시청앞광장~율지로 6 가	"
9	"	1,000	24,000	충무로 2 가~종로 2 가	"
10	"	1,000	24,000	월동 1 가~종로 1 가	"
11	"	900	21,600	북정동~종로 4 가	"
12	"	1,140	27,360	서울역광장~의주로 R	"
13	"	4,200	100,800	동대문~청량리	"
14	"	1,100	26,400	공덕동~마포동	"
15	"	1,650	49,500	영등포시장로타리~역전 ~(7)구청 앞 광장	"
16	"	2,800	67,200	영동 2 지구 48 부력~385 부력	"
17	"	1,800	43,200	영동 2 지구 72 부력~25 부력	"
18	"	1,200	28,800	천호구획정리지구내	"
19	"	3,200	76,800	서울역~광희동로타리	"
20	"	집 단	131,539	남대문지구 (소공~남대문~율지로)	"
21	"	"	2,210,486	여의도지내	"
22	"	"	260,500	잠실지구내	"
23	"	"	19,000	충무로 회현동 1 가	"
2 종 미관지구내					
번호	종별	연 장 (m)	면 적 (㎡)	위 치	비 고
1	2 종	8,725	209,400	서울역광장~구영등포구청	재 결 정
4	"	7,500	225,000	왕십리로타리~광진교	"
5	"	370	11,100	남대문~어린이놀이터	"
6	"	3,800	120,000	양화교~김포공항	"

번호	종별	연장(m)	면적(㎡)	위 치	비 고
7	2 중	2,800	67,200	동아일보사앞~청계천 6 가	세 결 정
8	"	2,700	64,800	래평로~광희동	"
10	"	600	14,400	종로 4 가~원남동	"
11	"	700	16,800	종로 3 가~돈화문	"
12	"	700	16,600	종로 2 가~경운동	"
13	"	6,200	148,800	신사동~포이동	"
14	"	1,700	40,800	영동교~대치동	"
15	"	3,800	91,200	반포동~영동교	"
16	"	4,240	101,760	영동지구 820 부력~716 부력	"
18	"	5,700	136,800	청량리~망우동	"
19	"	11,600	278,400	청계천 6 가~길동	"
20	"	5,900	141,600	삼동교~잠실교	"
21	"	1,500	36,000	남산 1 호터널~제 3 한강교	"
23	"	8,000	158,400	신길동~시흥동	"
24	"	2,500	60,000	염천교~공덕동	"
25	"	2,000	48,000	영등포역~문래동 4 거리및오류동	"
26	"	4,330	103,920	동교동~수색동	"
28	"	2,500	60,000	마장동~왕십리 4 거리	"
				미도극장~종암극장	"
30	"	3,630	87,120	신사동~삼수동 2 가	"
31	"	2,400	57,600	배명중고교~종암동	"
32	"	650	15,600	종암동~미아동	"
33	"	2,600	62,400	서울운동장~왕십리로타리	"
34	"	4,750	10,400	내자동~광희동 2 가	"
36	"	600	14,400	장충체육관~을지로 6 가	"
37	"	550	13,200	장충동~퇴계로 5 가	"
38	"	2,000	50,400	한남동로타리~청계천 7 가	"
39	"	1,800	40,800	대공고교앞~뚝소문동	"
41	"	2,300	55,200	녹번동~신사동	"
42	"	4,600	110,400	이대~공덕동~삼각지	"

번호	종별	연장(m)	면적(㎡)	위 치	비 고
43	2 종	1,500	36,000	수유동~삼번동	재결정
44	"	2,100	62,400	당산동 7가~영등포동	"
45	"	1,700	40,800	" 6가~영등포입체교차로	"
46	"	2,550	102,000	문배동~원효로 4가	"
47	"	350	7,200	남대문~남창동	"
48	"	5,900	141,600	명일동~가락동	"
49	"	2,000	48,000	시조사~이문동	"
50	"	1,410	33,840	전농동 4거리~용답동	"
51	"	1,900	45,600	신설동로타리~마장동	"
52	"	7,050	169,200	잠실지구내	"
53	"	2,300	55,200	포이동~양재동	"
54	"	300	7,200	섬내동 65~원효동 442 (상업준주거)	"
55	"	1,000	24,000	구이동 220~234 (준주거)	"
56	"	150	3,600	한남동로타리 (")	"
57	"	900	22,600	이태원 34~한남동 736 (준주거)	"
58	"	630	15,120	원효교~신계동 (상업)	"
59	"	370	9,880	신림동 (상업지역)	"
64	"	300	7,200	학동~학동 (강남구청주변)	"
65	"	220	5,280	" "	"
66	"	1,000	24,000	등촌동로타리~화곡시장 (강서구청주변)	"
67	"	2,300	27,6000	도곡동~대치동 (북측 12m)	"
3 종 미관지구					
번호	종별	연장(m)	면적(㎡)	위 치	비 고
1	3 종	3,000	100,800	남산동 1가~한남외인아파트	재결정
2	"	2,200	52,800	적선동~중화동	"
3	"	7,100	170,400	신사동~염곡동 (정부고속)	"
4	"	6,800	169,200	궁정동~정릉입구)	"
5	"	1,300	31,200	남산어린이놀이터~필동 1가	"

번 호	종 별	연 장(m)	면 적(㎡)	위	치	비 고
6	3 종	23,300	559,200	강변도로		재 결 정
7	"	32,600	782,400	강남도로		"
9	"	9,400	225,600	제 2 한강교~오정면 (경인고속)		"
10	"	2,000	48,000	성산동~홍은동		"
11	"	1,700	28,800	한남동~힐탑~광희 1 동		"
12	"	500	12,000	영천동산 246 ~영천동산 12-17		"
22	"	집 단	700,900	중구회현동~장충동일대		"
23	"	"	150,000	서울대학입구		"
20	"	600	14,400	도곡동지내		"
21	"	1,000	24,000	삼성동~도곡동		"

4 종 미관지구

번 호	종 별	연 장(m)	면 적(㎡)	위	치	비 고
1	4 종	5,000	120,000	우이교~도봉동		재 결 정
2	"	5,000	120,000	종암동~화랑역		"
3	"	4,600	110,400	석촌동~장지동		"
6	"	4,500	116,000	가양동~양화교		"
7	"	6,200	148,800	사당동~도곡동		"
8	"	11,750	282,000	장안동~우이동그린파크		"
9	"	2,700	64,800	수유동~말미		"
10	"	1,800	43,200	미아동~하계동		"
11	"	900	21,000	하월곡동지내		"
12	"	5,300	151,200	능동~면목동~신내동		"
13	"	1,400	33,600	망우동~면목동		"
14	"	900	21,600	상봉동~면목동		"
15	"	2,400	57,600	망우동~중량천 (유성국교)		"
16	"	2,000	48,000	" (서울식물)		"
17	"	1,300	31,200	담십리동~중곡동		"
18	"	1,100	26,400	중곡동지내		"
19	"	800	19,200	모진동~능동		"

번호	종 별	연 장(㎡)	면 적(㎡)	위	비 고
20	4 종	4,400	105,600	중곡동~자양동	재 결 정
21	"	2,600	62,400	중암동~청량리동~전농동	"
22	"	1,700	40,800	청량리로타리~임업시험장~고대	"
23	"	1,000	24,000	청량리역 후편	"
24	"	1,200	28,800	전농동광장~마장동	"
25	"	2,000	48,000	안암동광장~하왕십리	"
28	"	3,200	76,800	서빙고~이대원동	"
29	"	4,200	100,800	" ~원효로 4 가	"
31	"	1,500	36,000	신촌로타리~신천동	"
32	"	2,000	48,000	아현고가~용강동	"
33	"	3,300	79,200	마포구청앞~합정동	"
34	"	2,270	54,480	연대입구~연희입체교차	"
35	"	1,100	26,400	한남동 736 ~한남동로타리	"
36	"	2,200	52,800	성산동~동교동	"
37	"	3,750	90,000	남가좌동~대조동	"
38	"	3,900	93,600	연희동~신사동	"
39	"	5,850	140,400	성산동~북포동	"
40	"	2,500	60,000	녹번동~수국사	"
41	"	6,700	160,800	내발산동~고척동	"
42	"	3,490	83,760	가양동~신월동	"
43	"	5,000	120,000	양평동~신도림동	"
44	"	3,100	74,400	신길동~구로동	"
45	"	2,900	69,600	구영동포구청앞~신대방동	"
46	"	4,100	98,400	문래동 4 가~신도림동	"
47	"	6,800	163,200	노량진역앞~구로공단	"
48	"	800	19,200	대방동지내	"
49	"	2,200	52,800	고척동~광명리	"
50	"	1,700	40,800	화곡동~신월동	"
51	"	3,300	136,800	등촌동~구로동	"
52	"	1,500	36,000	양평동 3 가~당산동 3 가	"

번호	종 별	연 장(㎡)	면 적(㎡)	위 치	비 고
53	4 종	5,600	134,400	영봉포~오목교~신월동	제 결 정
54	"	4,130	99,120	신대방동~신림동	"
56	"	5,800	139,200	사당동~도곡동	"
58	"	2,900	69,600	이수교~방배동	"
59	"	2,000	48,000	포이동~양재동	"
60	"	2,800	67,200	새말~오금동	"
61	"	1,600	38,400	거여동~마천동	"
62	"	3,800	91,200	송파~거여동	"
65	"	2,200	52,800	암사동~하월동	"
66	"	10,200	244,800	목동~성수동 2 가	"
68	"	7,700	184,800	망원동~신성동	"
69	"	1,700	40,800	전농동~장안평	"
70	"	3,100	74,400	하월곡동~동부시립병원	"
71	"	6,000	144,000	신사동~청담동~대치동	"
72	"	1,100	26,400	청담~학동	"
73	"	6,600	158,400	압구정~역삼동	"
74	"	1,700	40,800	논현동~학동	"
75	"	1,000	36,000	잠실지대	"
76	"	1,900	45,600	삼전동~가락동	"
79	"	3,300	79,200	동작동~외인주백앞	"
80	"	2,600	62,400	말죽거리~성촌	"
81	"	1,400	33,600	자양동~구의동	"
82	"	2,000	48,000	응봉동~성수동	"
83	"	2,200	52,800	연희동~홍연교	"
85	"	2,700	64,800	국립경기장~암사동	"
86	"	1,800	43,200	방화동~공합동 (순환도로)	"
87	"	3,500	84,000	신월동~신정동 (")	"
88	"	4,100	98,400	오류동~안양교	"
89	"	2,000	48,000	경동시장~고매앞	"
90	"	1,800	43,200	안암동~중앙극장	"

번호	종별	연장(㎞)	면적(㎡)	위 치	비 고
91	4 종	1,350	32,400	봉원동 45~신촌동 1	제 결 정
95	"	1,400	33,600	학동~도곡동	"
96	"	700	16,800	학동~청담동	"
97	"	180	4,320	서대문구신사동 29번지 23-30	"
98	"	2,600	62,400	도곡동~잠실	"

5 종 미관지구

번호	종별	연장(㎞)	면적(㎡)	위 치	비 고
1	5 종	500	12,000	도봉동 (준주거지역)	제 결 정
2	"	850	20,400	신사동 24주변 (준주거)	"
3	"	950	22,800	음암동 117주변 (")	"
4	"	600	14,400	화곡동 569부락 (")	"
5	"	800	19,200	광명리 158로타리 (")	"
6	"	210	5,040	화곡 (준주거)	"

◎ 서울특별시 고시 제 165 호

도시계획사업 (학교) 시행허가

1. 서울특별시 고시 제 109(81.4.7) 호로 시설결정 및 동 고시 제 184 (81.5.8) 호로 지적승인된 도시계획시설 (학교)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사업 (학교) 시행허가하였음을 도시계획법 제 24조 및 동법시행령 제 25조와 건설부 고시 521 (81.12.31) 호의 권한위임사항에 의거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동작구청 도시정비과 및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시설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공람한다.

1982.4.22

서울특별시 장

가. 사업시행지 : 동작구사당동산 46의 5호일대

나. 사업의종류및명칭 : 도시계획사업 (학교) 남성중학교

다. 사업시행자주소, 성명 :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교육감

라. 사업시행규모및면적 : 9,151 ㎡

마. 사업의착수 및 준공예정일
착수 : 허가일로부터 30 일 이내
준공예정일 : 84.4.1

바. 토지의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서 : 별첨 (생략)

사. 위치및평면도 : 별첨 (생략). 끝

◎ 서울특별시 고시 제 166 호

도시계획사업 (학교) 시행허가

1. 건설부 고시 제 125호(74.12.6)로

고시된 잠실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496 구획 (종남동 390 번지) 13,884㎡ (4,200 평)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24 조 및 건설부고시 제 463 호 (79.12.10)의 권한위임사항에 의거 도시계획사업 (학교)를 시행 허가하고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시 교육위원회 시설과와 강동구청 도시정비과에 각각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82.4.23

서울특별시

가. 사업시행지 : 강동구잠실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496 구획 (강동구종남

동 390 번지)

나. 사업의종류및명칭 : 도시계획사업 (학교) 종남중학교

다. 사업시행자주소, 성명 : 영등포구 여의도동 1-163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교육감

라. 사업규모및면적 :
지적 : 13,884㎡ (4,200 평)
건축면적 : 1,950.75㎡ (590 평)
연면적 : 7,368.52㎡ (2,229 평)

마. 사업의착수및준공예정일 :
1982.4 ~ 1984.7.31

바.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조서, 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이전의 권리의 명세서

위 치	지 목	지 적	소유자이외의권리명세
강동구종남동 390 번지	대	13,884㎡ (4,200 평)	없 음

사. 토지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4조 3항의 관계인주소, 성명
1) 주소, 성명 : 서울특별시
2) 이해관계인 : 서울특별시

아. 시행허가설계도서 : 생략. 끝.

◎ 서울특별시 고시제 167 호

도시계획시설 (공원) 지적 승인

1. 서울시 고시 제 100 호 (82.3.9)

로 변경결정고시된 성동구 관내 자양동 696-5 (공원지) 및 699-6 (공원시설)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13 조 및 건설부고시 521 호 (81.12.31)의 권한위임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82.4.24

서울특별시

구 분	시 설 명	위 치	면적 (평방미터)	비 고
기정	어린이공원	성동구자양동 696-5	1,014.9	지
변경	"	" " 689-6	1,113.5	신

나. 결정도면별첨 (생략). 끝.

◎서울특별시 고시 제 168 호

도시계획시설(수도) 결정 및
지적승인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수도)을 다음과 같이 결정 및 지적승인하였기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동법 제13조와 건설부 고시

○ 시설조서

구분	시설명	위 치	면적(㎡)	비 고
신 설	수 도	은평구갈현동 333의9일대	316	지적승인 포함

○ 별첨 도면표시와 같음(도면생략) 끝.

◎서울특별시 고시 제 169 호

도시계획시설(도로) 지적승인

1. 서울특별시 고시 제 30호(82.1.23)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도로)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3조 및 건설부 고시 제 521호(81.12.31)의 권한위임규정에 의하여 지적승인하고 이를 고시한다.

가. 지적승인조서

구분	등급	류별	폭원	연장	기 점	종 점	비 고
신 설	소로	2	8m	620m	성북동 212-11	성북동 217-49	
신 설	소로	3	6m	62m	상월곡동 7-149	상월곡동 27-19	

○ 별첨 도면표시와 같음(도면생략)

◎서울특별시 고시 제 170 호

도시계획시설(학교) 지적승인

1. 서울특별시 고시 제 50호(82.2.3)로 시설결정된 도시계획시설(학교, 도로)을 다음과 같이 지적승인하였기 도시계획법 제13조 및

제 521호(81.12.31)의 권한위임사항에 따라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와 관할구청 시민봉사실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82.4.26

서울특별시 장

31)의 권한위임규정에 의하여 지적승인하고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성북구청 도시정비과와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82.4.27

서울특별시 장

건설부 고시 제 521호(81.12.31)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구로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82.4.27

서울특별시 장

가. 도시계획시설 (학교) 지적승인

구분	시 설 명	위 치	면 적 (㎡)	비고
신설	학 교	구로구 오류동 108-28 일대	11,402 (3,449)	
"	"	구로구 개봉동 43-6 일대	12,800 (3,872)	
"	"	구로구 개봉동 3 일대	9,910 (2,998)	
"	"	구로구 함동 3-4 일대	8,549 (2,586)	
"	"	" 궁동 111 일대	14,610 (4,419)	
"	"	" 궁동 107-1 일대	17,402 (5,264)	
"	"	" 궁동 108-1 일대	10,918 (3,302)	
"	"	" 선도림동 313-1 일대	12,753 (3,858)	
"	"	" 고척동 76-62 일대	13,090 (3,960)	
"	"	" 고척동 196-4 일대	12,612 (3,815)	
"	"	" 구로동 628-1 일대	13,137 (3,970)	

나. 도시계획시설 (도로) 지적승인조서

구분	등 급	류 별	폭원(m)	연장(m)	기 점	종 점	비고
기점	소로	3 류	6	90	구로구 궁동 138-1	구로구 궁동 114	궤 지
변경	"	"	"	"	"	"	
기점	"	2 류	8	70	구로구 궁동 111	구로구 궁동 109	
변경	"	"	"	"	"	"	궤 지
신설	"	3 류	6	200	구로구 궁동 98-1	구로구 궁동 103	
기점	"	"	6	150	구로구 궁동 109	" 100	
변경	"	"	"	"	"	"	궤 지
기점	"	2 류	8	180	구로구 궁동 107-2	구로구 함동 110	
변경	"	2 류	"	"	"	"	궤 지
기점	"	"	8	100	구로구 궁동 108-1	구로구 궁동 109	
변경	"	"	"	"	"	"	궤 지
기점	중로	2 류	15	100	구로구 고척동 76-61	구로구 고척동 82-2	
변경	"	"	"	"	"	"	궤 지

구분	등급	류 별	국원(m)	연장(m)	기 점	종 점	비 고
신설	소로	3 류	6	40	구로구고척동 197	구로구고척동 197	
기점	"	"	"	80	구로구고척동 196-1	"	
변경	"	"	"	"	"	"	폐 지
기점	"	"	"	150	구로구고척동 217	구로구고척동 197	
변경	"	"	"	"	"	"	
기점	"	2 류	8	50	구로구구로동 628-2	구로구구로동 625-9	
변경	"	"	"	"	"	"	
신설	"	"	"	130	구로구구로동 625-8	구로구구로동 625-18	폐 지

다. 별첨 도면 표시와 같음 : 도면생략

◎서울특별시고시제 171 호

주택건설 촉진법 제 33 조의 규정에
의한 민영주택건설사업 계획을 승인
하고 동법시행령 제 32 조의 5 의 규정
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1982. 4. 27

서울특별시장

1. 사업명 : 민영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2. 사업주체 : 영등포구 여의도동
1-885

가. 학교용지

(주)한양대표배종열

3.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규모

가. 위 치 :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양동 697 번지 외 20 필지

나. 면 적 : 39,202.8541

다. 건설규모 : 아파트 12 층 6 동
444 세대

상가 2 층 1 동 및 부대복리시설

4. 사업시행기간 : 82.4.27-83.5.31

5. 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조서

구 분	시 설 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점	학 교 용 지	자양동 120.121 B/L	4,060 평	폐 지
변 경	"	자양동 111.112 B/L	3,243.1 평	신 설

나. 도 로						
구 분	등 급	폭 원	연 장	지 점	총 점	비 교
기 점	소 로	6	118	자양동 696	자양동 697	
	"	6	113	자양동 695	자양동 695	
	"	6	118	구의동 597	구의동 597	
변 경	소 로	6	118	자양동 696	자양동 697	래 지
	"	6	113	자양동 695	자양동 695	
	"	6	118	구의동 597	구의동 597	

공 고

◎서울특별시공고제 173 호

K.S 표시허가취소처분공고

공업표준화법 제 21 조의 규정에 의
하여 다음과 같이 표시허가를 취소처
분하였기 동법 시행규칙 제 21 조 규
정에 따라 이를 공고한다.

1982. 4. 23

서울특별시장

소재지: 서울 도봉구 공릉동 230

대표자: 길 은 버

규격번호: KSC 9602

품 명: 교류 아크용접기

종류등급: 220 S 60 HZ H 종
AW 180, 240, 300, 400, 500

취소사유: 자진반납

취소일자: 1982. 4. 23

허가번호: 제 1673 호

허가일자: 78. 7. 18

제조업체: 코오롱 종합전기(주)

사 령

1982년 4월 26일자

령제 173 호

성명	계정		현부서	직급
	부서	직급		
김진호	종로구	지방행정사무관	종로구새마을과장	지방행정사무관
최진호	"	"	" 사회복지과장	" 시보
심우정	용산구	"	용산구수도관리과장	"
염명천	도봉구	"	도봉구사회복지과장	"
고경석	마포구	"	마포구	"
차성삼	구로구	"	구로구청소과장	"
진석규	동작구	"	동작구민방위과장	"
공용표	강남구	"	강남구새마을과장	"
정창영	"	"	" 민방위과장	"
이정관	내무국	"	내무국	"
이종기	"	"	"	"

◎ 1982년 4월 23일자 명제 174호 판악구민방위과 지방별정직 6급상당 조용규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지방별정직 7급상당 김 남 훈 고압가스관리기사 2호봉을 급함. 도시가스사업소 근무를 명함.	
◎ 1982년 4월 26일자 명제 175호 지방별정직 7급상당 최 병 국 고압가스관리기사 3호봉을 급함 도시가스사업소 근무를 명함.		◎ 1982년 4월 27일자 명제 176호 종합건설본부 지방건축기사 구 본 규 지하철도운영사업소파견 (82.4.27-82.11.30)	

◎ 1982년 4월 27일자	령제 177 호	올림픽조직위원회 파견근무를 명함.
동대문구사무 2과 지방행정주사	조 정 제	(82. 4. 28 - 83. 4. 27)

◎ 1982년 4월 30일자 령제 178 호

성명	발령사항	현부서	직급
위 혼 량	기획관리실통계전산담당관	강서구방화 2 동	지방행정 서기
조 회 열	성 동 구	통계전산담당관	" 주사
김 광 명	기획관리실통계전산담당관	도봉구총무과	" 서기
임 원 택	서부위생처리장	청 소 과	" 주사
권 혁 철	환경녹지국청소과	서부위생처리장	" "
김 유 권	동대문구	연 료 과	" 주사보

◎ 1982년 4월 30일자 령제 179 호

성명	발령사항	현부서	직급
정 용 출	성 동 구	강남구내곡동	지방행정주사
이 강 준	강 동 구	은평구구산동	" 서기보
황 선 도	지하철운영사업소	강남구대치 2 동	" 서기
이 윤 수	마 포 구	도시가스사업소	" 주사보
박 재 성	도시가스사업소	서대문구남가과 2 동	" 서기보
윤 재 환	강남병원	강동구잠실 6 동	" 서기
이 영 록	"	" 잠실 1 동	" 서기보
윤 형 원	서대문병원	은평구녹번동	" "
전 현 수	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	강동구잠실 2 동	" 서기
박 기 달	재개발과	시립운동장	" "
전 완 수	시립운동장	강남구반포 2 동	" "
이 민 수	종 로 구	종합기술시험연구소	" "
윤 경 학	공무원교육원	강남구압구정동	" 서기보
이 흥 열	도봉구보건소	새종문화회관	" 주사
최 해 만	새종문화회관	도봉구보건소	" "

◎ 1982년 4월 30일자 경제 180호

오 세 연

동작구보건소보건지도과장
지방의무기과 15호봉을 급함.

◎ 1982년 4월 28일자 경제 181호

민방위국운영과장 이 규 현
서 기 관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거 휴직을 명함.
(1982.4.28, 1982.10.14)

◎ 1982년 4월 28일자 경제 182호

관악구시민국장 이 경 만
지방서기관

복직을 명함.
27호봉을 급함.
내무국 근무를 명함.

◎ 1982년 4월 28일자 경제 183호

내무국총무과 박 석 현
지방별정직 5급상당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서울특별시장

◎ 1982년 4월 28일자 경제 185호

박 석 현

별정직 4급상당에 임함.

서울특별시 비서관에 보함.

대 통 령

◎ 서울특별시 공고제 174호

도시계획사업(학교) 시행계획
공람공고

1. 서울특별시 고시 제 166호(77.5.30)로 도시계획시설(학교) 지적 승인된 관내 성북동 168-275번지의 2필지에 대하여 도시계획사업 시행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청취코자 도시계획법 제25조의 2의 규정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열람의 공람에 공하고자 이에 공고함.

2. 관계도서는 성북구청 도시정비과
와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 및
건물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이
게 한다.

1982. 4. 27

서울특별시

공 랑 개 요

- 1) 사업장의 위치 : 성북구 성북동
168-275 번지의 2 필지
- 2) 사업의 종류와 명칭 : 도시계획사
업 (학교) 시행 동구여자상업고
등학교
- 3) 사업의 면적 및 규모

가) 면적 : 43,693 m^2

내 규모 : 건축면적 738 m^2 (지상
1 - 5층)

연면적 : 2,698.6 m^2

구조 : 철근콘크리트 라멘조

4) 사업의 시행자 주소, 성명 : 성북
구 성북동 168-275 학교법인
동구학원 이사장 김 정 욱

5) 착공 및 준공예정일

가) 착공일 : 허가일로부터 1개월
이내

나) 준공예정일 : 착공일로부터 1년

6) 사용할 토지 : 별첨 토지조서

(생략).